자체종합감사

- 2014년 자체종합감사 -

감사결과 처분지시서

2014. 5.

대구환경공단 (감사팀)

목 차

Ι.	감사실시 개요 3
Π.	감사결과 처분지시서4
1.	금고 대행업무 관리 소홀[시정]
2.	현판 제작 설치에 따른 부산물 처리 부적정[시정]
3.	징계처분자 호봉승급 및 수당 지급 부적정[시정]
4.	예산 지출과목 부적정[주의]

Ⅰ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3장(자체감사활동)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에 의거 2000년 7월 1일"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"창립이후 2013년 7월 1일부로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으로 공단 본부 업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대 내·외적으로 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함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○ 감사대상 : 공단 본부(◆◆·◆◆지원부)

O 감사범위: '12년 3월 ~ '13년 3월까지 추진업무

3. 감사중점사항

- O 예산편성 및 집행, 경영평가(내·외부)관련사항
- O 인력운용, 보수지급 적정여부(무기계약직 포함)
- O 각종 제세공과금 및 세입 세출외 현금 관리실태
- O 공단 재산, 차량 등 물품구매 및 관리 적정여부
- O 인사, 노무관리 적정여부
- O 안전관리 및 비상대비 대책
- O 임원지시사항 이행실태 등

4. 감사기간 및 인원

2014. 4. 28. ~ 4. 30까지 기간중 3일간 監事외 5명(청렴옴부즈만 1명포함)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감사팀 내부검토 과정과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.

대 구 환 경 공 단

시 정 요 구

제 목 : 금고 대행업무 관리 소홀

관련부서 : ◈◈지원부

내 용

- 공단 「회계규정」 제39조(금전취급업무의 대행) 이사장은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(이하 "지정금융기관" 이라 한다)하여 금전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"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금고업무 취급계약서" 제9조(금고업무의 관장) ①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본부 금고는(△△영업부)에서 관장하며, 각 사업소의 금고업무는 " 갑"이 별도로 지정하는 영업점 (△△지점, △△지점)에서 업무를 관장한다.
- ·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최종 체결일 : 2007년 12월 24일
- "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금고업무 취급계약서" 22조(유효기간)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 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 라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 2014년 4월 30일 까지 갱신 또는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았으며.
- 또한, 취급계약서 제9조(금고업무의 관장) ①항에 각 사업소의 금고업무는 "갑"(대구환경공단)이 별도로 지정하는 영업점에서 업무를 관장한다. 라고 되어 있음에도 ◈◈사업소(2009. 9. 1), ◈◈사업소(2013. 2.1)가 각각 신설 됨에도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갱신하여 금고를 지정하지 아니하고
 ◈◈ 및 ◈◈사업소장이 각각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체결 한 사실이 있음

조치할 사항 ◈◈지원부장께서는 공단 「회계규정」제39조에 의거 금고업무 취급계약서를 현실과 적합한 내용으로 갱신 계약 조치바라며, 앞으로는 관련 직원이 금고업무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시정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

시 정 요 구

제 목 : 현판 제작 설치에 따른 부산물 처리 부적정

관련부서 : ◈◈지원부

내 용

- "기획재정부 계약예규" 제109호, "예정가격작성기준" 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) 제2절(제조원가계산) 제9조(재료비) 제4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, 부산품,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
- · 2014. 2. 17일 각 사업장 주출입구 현판 제작 및 설치를 하면서 발생된 기존 현판(신주 주물 7개소 x 4kg x 3,300원/kg =92,400원)을 감사일 2014. 4. 30일 현재까지 상계처리 하지 않았음.

조치할 사항 ◈◈지원부장께서는 사업장 주출입구 현판 제작 및 설치를 하면서 발생된 기존 현판(신주 주물) 가격에 대한 금액(92,400원)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 정 요 구

제 목 : 징계처분자 호봉승급 및 수당 지급 부적정

관련부서 : ◈◈지원부

내 용

○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33조(승진, 승급의 제한) 제1항의 제2호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 된 날로부터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승진 승급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, "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" (안전행정부 예규 제10호 2013. 5. 10)에 의하면 견책과 감봉은 각각 6개월. 12개월 경과 후 승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

·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호봉 승급 및 각종 수당 등을 ○○○에게 1개월(62,940원), ○○○에게 3개월(129.020원) 분을 부적정하게 지급 하였음.

조치할 사항 ◈◈지원부장께서는 징계처분자에 대한 부적정하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○○○(62,940원)과 ○○○(129,020원)에게 각각 회수 조치 및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라며,

앞으로 징계처분자에 대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

주 의 요 구

제 목: 예산 지출과목 부적정

관련부서 : ◈◈지원부

내 용

- "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" (대구광역시 2012년도)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1(상하수도 사업) 재료비(711-206-01)의 과목해소에 의하면 식재료비는 구입할 수 없음에도, 2012. 11. 23일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위문 식재료구입을 집행(포도 66box, 사과 20box) 하였으며.
 - · 또한,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과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 과목이 변경되어 회의에 따른 식사 제공은 2012년도는 행사운영비(216-01)의 과목에서 2013년도는 사무관리비(722-201-01)로 집행하여야 함에도
 - · 예산집행 지출원인 경영지원부 ■■파트장 ○○○는 예산 지출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.

조치할 사항 ◈◈지원부장께서는 앞으로 예산 지출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관련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